

의안번호	제 116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발 의 자	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7년 5월 2일

##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박재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
----------	-----

발의연월일 : 2007년 5월 2일

발 의 자 : 박재국, 김환동, 연만흠, 강태원,  
이종호, 이필용, 박종갑 (7인).

### 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함.

###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 (3) 사업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함
- (2) 위원은 도와 해당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분야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연임 가능
- (4)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조례 제 호

##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 지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충청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지역에 대한 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영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3.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 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와 해당 시·군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분야의 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8. 생략

제6조(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발전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제4조제2항에 관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

③그 밖에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 [별표 2]

####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시·군·구	행정구역(읍·면·동)
합 계	42시·군·구	149읍·면·동 (16읍·46면·87동)
충청북도 (4)	청주시 (2동)	외남동, 외하동
	청원군 (1읍·1동)	내수읍, 외평동

※ 타시도 주변지역은 생략하였음.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